

가정상담

2021

통권 460호



KOREA LEGAL AID CENTER FOR FAMILY RELATIONS NEWS LETTER • ISSN1227-7568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소는 11월 25일 본소 대강의실에서 2021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를 열어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관련 기사 33번)



본소 광배희 소장이 지난 11월 9일 열린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상담소에 대한 오랜 헌신, 호주제 폐지 운동 등을 주도하여 평등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등으로 '김활란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하였다. (관련 기사 33번)

4 • 이 달의 메시지

6 • 특별기고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❶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26 • 기획연재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년을 향해 ④

27 • 가정폭력상담실

28 • 어떻게 할까요

30 • 결혼과 인생(222) 영화 이야기

굿나잇 마미 _ 김용언

32 • 좋은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33 • 상담소 소식과 상담 통계

36 • 소송구조



표지글씨 | 박병호 서울대 명예교수

표지그림 | 이현혜 평생회원

〈작약꽃 화병〉



처음 만나는 세상 소통의 소중함을 깨닫고 배우며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2021년이 저물어갑니다. “팬데믹, 확진자, 자가격리, 거리두기, 방역과 방역수칙, 음압병동, 백신, 기저질환 …” 거의 써 본적 없는 말들이 일상의 용어가 된 지난 2년 여 시간이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를 일상으로 하면서 ‘위드 코로나’ 단계로 일상생활로 진행함으로 써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성이 터지는 스포츠 경기장, 열광하며 몸으로 부딪히는 열띤 콘서트장의 장면을 볼 때면 저런 곳에서 코로나19가 퍼지면 어쩌나하는 걱정이 앞서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저런 시간을 즐길 수 있던 시절이 돌아올 것인가 하는 아득함이 밀려오곤 하는 것 또한 지금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2020년을 지나 2021년을 지내면서는 상담소도 코로나19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현실화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2021년에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거의 쉼 없이 면접상담을 진행하였고,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2020년에는 진행할 수 없었던 심포지엄도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성황리에 치러냈습니다. 경우에 따라 대면과 비대

면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강의와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관에서부터 체온을 재고 방문이력을 남기며 최근 들어서는 백신 패스까지 도입된 현실에서도 상담소를 찾는 내담자들을 볼 때면 상담 특히 가정문제에 관한 상담의 경우 대면하여 소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실히 필요한 일인가를 절감합니다. 서로 마스크를 쓰고 아크릴 판을 사이에 두고 있을지라도 말입니다.

학생들의 전면등교가 이루어지고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다고 해도 온전한 대면이 자유로운 시대는 요원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이 암울해 보이는 현실에서도 상담소가 온라인으로 심포지엄을 열고, 상담위원들이 자신의 상담실 컴퓨터 앞에서 다른 곳 다른 컴퓨터 앞에 앉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족법을 강의하며 이 시대를 보내고 있듯이 우리 사회 아니 모든 인류가 이러한 때를 나름의 방법으로 헤쳐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인류의 위엄을 보여주는 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비대면,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소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점입니다. 비대면의 시대, 직장인들의 재택근무가 상당히 일반화되면서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고 심지어 요즘에는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주고받는 전화통화 보다 문자 메시지를 선호한다고 하지만 필요에 따라 온라인 강의를 하고 경우에 맞춰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이것이 일반화, 보편화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대면이 어려운 시기에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소통이 그만큼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고 얼굴을 마주보고 표정을 보이고 동작을 읽고 하는 것이 진정한 소통의 근원이며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때 우리는 진정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 안에서 보다 성숙한 인간관계가 성립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한 비대면의 시대,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지속된 해를 보내면서도 상담소는 변함없이 법률구조 사업에 최선을 다하였고, 가정문제의 현안을 다각도로 짚어보며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이며 각종 교육사업도 조심스럽게 진행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이렇게나마 진전을 보이게 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좀 더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참된 의미로 일상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올 한 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으로 상담소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가정의 평화와 건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현 소 해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I. 서론

정부는 2021. 6. 18. 상속권 상실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이라고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였다.¹⁾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등과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박탈 내지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가령 제18대 국회에서는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 이행의 악의적 회피·학대·유기·모욕·협박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에는

상속분을 5할 감액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²⁾ 제19대 국회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자를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³⁾ 제20대 국회와 제21대 국회에서는 이에 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표1】 및 【표2】와 같은 다양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되었다.⁴⁾ 그 밖에 정부는 2011년 법무부 산하에 『제3기 가족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피상속인의 청구 또는 유언에 의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하 ‘2011년 개정안’이라고 한다)⁵⁾을, 2020년 법무부 산하에 『상속

* 본 원고는 2021. 9. 9.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년 한국가족법학회 정책토론회: 이른바 구하라법(안)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에서 발제한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서, 가족법연구 제35권 제3호(2021.11.30. 발간)에 동일한 제목과 내용의 글이 논문 형태로 수록되었다. 본 원고에서는 지면 관계상 문헌인용을 위 논문에 미루고, 상세한 각주를 생략한다.)

1) 의안번호 2110864(2021. 6. 18. 정부 발의).

2) 의안번호 1813961(2011. 11. 29. 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3) 의안번호 1918040(2015. 12. 4.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

4) 이하 각 개정안은 대표발의자의 성명을 붙여 약칭한다.

5) 2011년 개정안의 내용은 윤진수, 「친족상속법 강익」(제3판), 박영사, 2019, 346-347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1: 제20대 국회 발의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의안번호	대 강
이연주 의원	2018.7.16.	2014427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 또는 교류가 단절된 경우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
박대출 의원	2019.3.5.	2018974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안
박재호 의원 ⁶⁾	2019.7.24.	2021620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을 유기, 학대한 경우 및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는 한편, 상속결격사유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피상속인 등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분 감액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안
이석현 의원	2019.8.1.	202180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소정의 양육비채무자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비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안
민홍철 의원 ⁷⁾	2019.8.14.	2021970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안
원혜영 의원	2019.10.7.	2022811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피상속인 사망 전 5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을 단절하여 그의 연락처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안
서영교 의원 ⁸⁾	2019.11.14.	2023810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 및 부모는 모가 살인이나 13세 미만인 사람 및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의 범죄로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는 안

- 6) 위 개정안은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 행위 등이 있을 때 상속분 감액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매우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2020. 8. 25. 동일인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안번호:2103257)에 의해 의미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 【박재호 의원안】이란 의안번호 2103257에 해당하는 개정안만을 의미한다.
- 7) 위 개정안은 2020. 11. 9. 동일인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안번호: 2105118)에 의해 의미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 【민홍철 의원안】이란 의안번호 2105118에 해당하는 개정안만을 의미한다.
- 8) 위 개정안은 2021. 2. 10. 동일인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안번호:2108076)에 의해 의미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 【서영교 의원안】이란 의안번호 2108076에 해당하는 개정안만을 의미한다.

【표2: 제21대 국회 발의안】

대표발의	발의일자	의안번호	대 강
서영교 의원 ⁹⁾	2020.6.2.	2100070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안
신영대 의원	2020.7.3.	2101386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 학대·유기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친족 사이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상속인이 될 자가 고의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서 피상속인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청구 또는 공정증서유언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 • 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 용서 제도 및 상속권 상실시 대습상속 개시 근거 조문 마련
박재호 의원	2020.8.25.	2103257	상속인이 될 자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학대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가정법원이 친족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또는 피상속인의 공정증서유언에 의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안 • 특별연고자 부여 허용 • 상속권 상실시 대습상속 개시 근거 조문 마련
민홍철 의원	2020.11.9.	2105118	직계존속,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한 상해나 폭행의 죄로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을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안
이명수 의원	2021.1.25.	2107619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 및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을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안
서영교 의원	2021.2.10.	2108076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안 • 상속결격으로 대습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배우자를 대습상속인에서 제외 • 상속결격확인 절차 마련
이태규 의원	2021.5.3.	2109874	직계존속이 아동학대범죄로 징역 3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및 친권상실선고를 받아 실권회복되지 않은 사람을 상속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안

9) 위 개정안은 2021. 2. 10. 동일인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의안번호:2108076)에 의해 의미를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하에서 【서영교 의원안】이란 의안번호 2108076에 해당하는 개정안만을 의미한다.

권 상실제도 도입을 위한 TF』¹⁰⁾를 설치하여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하 ‘TF안’이라고 한다)을 확정하는 바 있다. TF안은 2011년 개정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며,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안은 TF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위 각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제도를 법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 절차의 개시와 시기, 사유, 효과 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등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개정안에 대한 학계의 평가도 분분한 상황이다.¹¹⁾ 이하에서는 먼저 상속권 상실제도와 관련해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관련 개정안들과 정부안을 비교 분석하면서 상속권 상실제도의 의의를 짚어보고(II.), 그동안 상속권 상실제도에 대해 제기된 몇 가지 비판에 대해 논박하고자 한다(III.).¹²⁾

II. 상속권 상실 제도에 대한 해설

1. 법적 구성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해 당연히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구성하는 방안, ② 피상속인의 유언 등 의사표시에 의해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구성하는 방안, ③ 법원의 재판을 거쳐 상속권이 박탈되는 것으로 구성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미국의 통일 유언검인법(Uniform Probate Code)은 ①의 방안을(UPC 제2-114조), 독일의 유류분 박탈 제도는 ②의 방안을(독일 민법 제2336조), 프랑스의 재판에 의한

- 10) 당시 TF의 위원장은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 TF 위원은 김민지 사무관(법무부), 김상훈 변호사(법무법인 가온), 김윤정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배인구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이동진 교수(서울대) 조경애 부장(한국가정법률상담소)과 필자로 구성되었다(각 위원 소속 및 직책은 TF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 11) 김상용·박인환, “상속권상실선고에 관한 법무부 개정안의 문제점”, 중앙법학 제23집 제1호(2021), 7-46면; 김원태, “상속권상실 선고 제도의 절차법적 관점에서의 몇 가지 검토 과제”, 民事訴訟 제25권 제2호(2021), 173-230면; 윤진수, “상속권 상실에 관한 정부의 민법개정안”, 比較私法 第28卷 3號(2021), 241-278면; 이동진, “상속결격·상속권상실과 대습상속 민법 개정안 비판-”, 家族法研究 제35권 2호(2021), 93-118면; 이해진, “상속인의 범위와 자격 등에 관한 諸문제”, 東亞法學 第90號(2021), 37-62면. 그 밖에 부양의무 불이행시 상속권 박탈 방안에 관한 문헌으로 김상용, “자녀의 유류분권과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民事法學 제36호(2007), 677-685면; 김세준, “유류분제한의 필요성과 그 요건 독일상속법 규정의 검토 및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家族法研究 제28권 3호(2014), 343-382면; 박지원, “부양의무 해태와 상속결격사유 확대에 관한 입법론 실체법 및 절차법적 관점에서-”,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2020), 219-250면; 이보드레, “부양을 위한 상속제도로서의 유류분 再考 -자녀의 상속권에 관한 미국 법리의 시사점-”, 家族法研究 제33권 3호(2019), 162-163면; 이우리, “부양의무를 불이행한 부모의 상속결격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17.2.22. 선고 2017헌바59 결정-”, 家族法研究 제32권 2호(2018), 425-438면; 정구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견”, 민사법연구 제28집(2020), 255-261면; 최현숙, “상속과의 연계를 통한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의 강화”,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17권 1호(2013), 192-219면 등 참조.
- 12) 그 밖에 정부안의 독특한 특징으로 상속권 상실에 소급효를 인정하면서 제3자 보호 규정을 마련한 점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윤진수(2021), 263-264면에 상세한 해설이 있고, 첨언할 것이 없으므로 더이상 논하지 않는다. 또한 2011년 개정안과 TF안, 정부안, 각 개정안 간에는 상속결격 및 상속권 상실시 대습상속 개시 여부 및 대습상속인의 범위에 관하여 큰 차이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동진(2021), 95-115면에 상세한 내용과 비판이 있고, 첨언할 것이 없으므로 더이상 논하지 않는다. 상속재산 관리의 경우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개정안과 두지 않는 개정안이 있으나, 당연히 필요한 조문이고,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개정안들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므로, 따로 논하지 않는다. 정부안의 상속권상실 효과 및 상속재산관리 관련 조문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로 이진기, “상속권상실청구제도 유감”, 法律新聞 제4929호(2021.10.7. 발간)(위 문헌은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73264>의 검색결과를 기준으로 인용하였으므로, 이후 면수 인용을 생략한다. 최종방문일자: 2021.11.20.) 참조.

상속결격 제도는 ③의 방안을 택하고 있다(프랑스 민법 제727조의1). 세 가지 방안이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가령 일본의 상속인 폐제 제도는 ②와 ③의 방법을 결합하여 피상속인이 직접 상속인 폐제의 청구 내지 유언을 한 경우에 한해 법원의 재판을 거쳐 상속권을 박탈한다(일본 민법 제892조 및 제893조). 오스트리아는 ①과 ②의 방법을 결합하여 피상속인이 유언 등 상속권 박탈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상속결격사유로 인정한다(오스트리아 민법 제541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개정안 중 압도적 다수는 ①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부양의무 위반 또는 일정한 유형의 범죄행위가 있었던 경우를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여 피상속인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나 재판이 없더라도 당연히 상속권이 박탈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속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리 법상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인은 즉시 상속권을 상실하며, 피상속인 사망 후 누구라도 제소기간의 제한 없이 그의 상속인 지위를 다투는 것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경우”(【박대출 의원안】), “양육비 채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이석현 의원안】),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이명수 의원안】), “양육을 현저히 게을리하는 등 양육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서영교 의원안】) 등과 같은 평가개념을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면 상속인 지위 확정에 과도한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 헌법재판소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민법 제1004조가 직계존속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¹³⁾ 우리나라와 같이 부양의무의 존부와 범위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구체적 권리 의무로 보지 않는 법상황에서 부양의무 위반과 상속결격 사유를 연동하는 것은 더욱 부적절하다.¹⁴⁾ 외국의 입법례도 대부분 상속결격 사유는 매우 중대한 사안에 한해 그 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상대적으로 경미하거나 법관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의사표시나 재판이 있어야만 상속권 박탈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⁵⁾

한편 【이언주 의원안】과 【원혜영 의원안】은 ②의 방안을 택해 독일식의 유언에 의한 유류분 박탈 제도 도입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위 각 개정안이 제시하는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일방적으로 유류분 박탈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유류분 박탈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해 부당하게 유류분 박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당해 상속인은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 유류분 박탈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13)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7헌바59 결정

14) 부양 및 양육에 관해 추상적 권리-구체적 권리 준별론을 택하고 있는 판결로 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 결정; 대법원 2011. 8. 16.자 2010스85 결정 등 참조.

15) 가령 독일은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자를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한편(독일 민법 제2339조 제1호), 피상속인에 대해 법률상 부담하는 부양의무를 악의적으로 위반한 때 또는 피상속인·그의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그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거나 범죄 또는 중대한 비행은 저지른 때 피상속인이 사인처분에 의해 직계비속·부모 또는 배우자의 유류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였다(독일 민법 제2333조 및 제2336조). 반면 프랑스는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로 중죄 판결을 받은 자를 당연 상속결격 사유로(프랑스 민법 제726조), 피상속인에 대한 살인·살인미수 또는 상해치사로 경죄 판결을 받거나 피상속인의 신체적 완전성을 침해하는 범죄를 저지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은 자 등을 재판에 의한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한다(프랑스 민법 제727조 및 제727조의1). 일본은 고의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하였음을 이유로 형에 처해진 자를 상속결격사유로 규정하는 한편(일본 민법 제891조 제1호), 피상속인에 대해 학대를 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가한 때 기타 현저한 비행이 있을 때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법원에 상속인 폐제를 청구하거나 유언에 의해 상속인 폐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유언집행자로 하여금 법원에 상속인 폐제를 청구하도록 할 수 있게 하였

데,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이러한 피상속인과
의 개인적·주관적 사정의 존부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
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증명이 곤란한 상황에서 피상속인
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에 의해 보장된 유류분을 일방적
으로 박탈당하는 것은 상속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
다. 독일 민법은 이러한 사정에 대비하여 유류분 박탈의 의
사표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유류분 박탈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조문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독일 민법 제2336조 제4항), 위 각 개
정안은 이러한 조문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러한 조문을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
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증명책임을 전환하면 유류
분 박탈의 의사표시가 담긴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에
서 피고(즉, 상속권 상실에 의해 이익을 얻는 자)가 스스로
유류분 박탈 사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느닷
없이 소송에 연루된 피고 측에서 이를 증명하기란 원고만
큼이나 어려운 일이며, 번잡스럽고 귀찮은 일이기도 하다.
피고 측의 증명 실패 또는 증명 포기는 결국 피상속인의 유
언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박탈의 효과가 부정되는 결과로
이어지며, 이 경우 피상속인에 의한 유류분 박탈의 유언은
자신의 의사를 실현시키는 데 그다지 유용하지도 않으면서
공연히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사후 분쟁만 증가시키는 결
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독일에서도 피상속인
이 생전에 ‘유류분박탈사유 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미리 증거보전절차를 신청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사후 분
쟁을 방지하고, 상속인들을 증명곤란으로부터 구제해 주고
있다.¹⁶⁾ 우리나라에서 유언무효 확인의 소는 민사법원에서
관할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유류분을 박탈당한 상속인과

그로 인해 이익을 얻은 상속인들 간에 원만한 분쟁 해결과
법원에 의한 후견적 개입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부당하게
유류분을 박탈당한 상속인은 유언무효확인 판결의 확정 후
다시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의 소 내지 유
류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상속을 둘러싼 법
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에도 해가 된다.

2011년 개정안과 TF안, 정부안은 모두 이러한 점을 고
려하여 ③의 방안, 즉 미리 법원의 재판을 거쳐 원고 측이
스스로 상속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증
명하는 데 성공한 경우에 한해 상속권의 상실이 가능하도
록 하였다. 【신영대 의원안】이나 【박재호 의원안】의 태도
도 이와 같다. 이때 상속권 상실 재판은 그 재판의 확정
에 의해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변동은 초래하는 형성소송으로
서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조정전치
주의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이 TF안 마련 당시 상속권 상
실 사건을 조정전치주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사실상 유류
분 사전 포기 약정¹⁷⁾으로 기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
었으나, 피상속인의 의사실현을 위해서는 종국적으로 유류
분 사전포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조정절차에서 법관이나 조정위원 등의 개입을 통해 유류분
사전 포기에 따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
해였으므로, 이를 조정의 대상으로부터 제외하지 아니하였
다. 설령 유류분 제도 잠탈의 우려가 있어 「가사소송법」 제
59조 제2항¹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을 인낙하는 방식의 조정
이 허용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의 취하 등을 내용으로 하
는 조정까지 금지할 이유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정전치주의를 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¹⁹⁾

다(일본 민법 제892조 및 제893조).

16) BGH NJW 1974, 1084.

17) 현재 우리 판례는 유류분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참조.

18) 위 조항은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가령 대법원 1968. 2. 27. 선고 67므34 판결은 친생부인 조정조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친생부인 사건이 조정전치주의의 대상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상속권 상실 청구의 시기

재판에 의한 상속권 상실 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은 다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피상속인 생전에 스스로 상속권 상실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②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권 상실의 유언을 해 놓은 경우에 유언집행자가 대신 상속권 상실의 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방안, ③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상속권 상실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그것이다. 일본의 상속인 폐제 제도는 ①과 ②를 결합한 방법을, 프랑스의 재판에 의한 상속결격 제도는 ③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신영대 의원안】은 ①, ②, ③의 방법을 모두 병행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스스로 또는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상속권 상실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상속인 사망 후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 【박재호 의원안】은 ②와 ③을 결합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해 유언집행자가 상속권 상실의 재판을 청구하거나, 피상속인 사후에 친족·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상속권 상실의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스스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하였다.

부양의무 불이행 내지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피상속인이 특정의 상속인과 적대적 관계에 있거나 그 관계

가 아예 단절된 경우에 그러한 자를 상속으로부터 배제시키고자 하는 피상속인의 의사는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상속법의 구조하에서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상속인 지정이나 상속분 지정을 할 수 없으므로, 원치 않는 법정상속인을 상속으로부터 배제시키고자 하는 피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재산을 전부 그 외의 자에게 유증 또는 증여하는 방식으로 그 의사를 실현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법정상속인에게 유류분이 있다면 그를 상속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완전히 실현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물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²⁰⁾하기 위한 제도로서 강행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피상속인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정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을 함부로 박탈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유류분 박탈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²¹⁾라면 그를 상속으로부터 제외하려는 피상속인의 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피상속인의 의사 추정이나 가족 간의 유대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는 법정상속 제도의 의의에도 부합한다. II.1.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유언에 의한 일방적 유류분 박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소송 구조상 증명책임의 문제로 말미암아 적절치 않지만,

20) 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20 결정.

21) 이러한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 있고, 개정안들의 태도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TF안은 ①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및 ②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법률상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를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467 결정은 “유류분권리자는 일반적으로 혈연이나 가족 공동생활을 통하여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던 사람들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법정상속에서 완전히 벗어난 형태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함으로써 가족의 연대가 종국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저지하는 기능”이라고 서술하고 있는바, ① 또는 ②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피상속인과 가족으로서의 연대가 파괴되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상속이나 상속재산으로부터의 부양을 기대하는 것이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이언주 의원안】이나 【원혜영 의원안】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없는 직계비속이 일정 기간 이상 피상속인과 연락 또는 교류가 단절된 경우에 유류분을 박탈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당연히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기여가 있을 때에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상속분을 가산해주고 있을 뿐인바, 단순히 기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 내지 유류분을 박탈하는 것은 법정상속제도 전반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는 상속권 상실 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상속권 상실 사유에 관한 정부안의 태도도 이와 같다.

적어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스스로 유류분 권리자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특정인을 상속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상속의 영역에서 사적 자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자기 사후에 제3자의 청구에 의존해서만 이러한 의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 따라서 ③의 방법만을 택하는 것은 따를 수 없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스스로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족 간의 분쟁을 격화시킨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가족 간의 갈등과 분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분쟁의 장을 법원으로 이동시켜 합리적 규범에 따라 분쟁이 해결되도록 할 것인가, 가족 구성원 간의 권력 및 애정관계에 기초해 가족 내에서 자율적으로 분쟁이 해결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을 뿐이다. 피상속인 스스로 특정 상속인을 상속으로부터 배제시키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력으로 그 의사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적 자치의 기초이며,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상속 분쟁을 피상속인 사후에 남겨진 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박재호 의원안】과 같이 피상속인 사후에 유언집행자·친족·이해관계인·검사에 의한 상속권 상실 청구만을 허용하는 것

은 공연히 분쟁의 시기를 뒤로 미루고, 상호 간에 증명의 어려움을 배가시킬 뿐이다. 피상속인에 의한 생전의 상속권 상실 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피상속인 자신의 의사를 실현한다는 점에서도, 사후의 상속 분쟁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도, 법정상속인을 조기에 확정하여 이해관계인들의 법적 지위를 안정시킨다는 점에서도 유익하다.²²⁾ 유언에 의한 유류분 박탈만을 허용하는 독일에서도 유류분 박탈 사유 존부 확인의 소를 통해 사실상 피상속인에 의한 생전 청구를 허용하고 있음은 II.2.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물론 가족 간에 부양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직접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피상속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유언에 의해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고,²³⁾ 피상속인 사후에 유언집행자로 하여금 대신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²⁴⁾, 즉 ①과 ②의 방법을 병행하는 것으로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 일본의 입법례도 이와 같다. 【신영대 의원안】과 【박재호 의원안】 모두 유언에 의한 상속권 상실 재판을 인정한다. 2011년 개정안 역시 ①과 ②의 방안을 병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확정된 바 있다. 다만, TF안과 정부안은 기존의 2011년 개정안과 달리 피상속인이 생전에 스스로 또는 유언에 의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제도와 아울러 피상속인 사후에 제3자도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

22) 이에 대해 김상용·박인환(2021), 12-15면은 상속개시 전까지는 구체적인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는데, 상속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논리모순이라고 비판하면서 상속개시 전의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다면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도 유효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독일식의 유류분 박탈 제도에서는 유언의 효력 발생에 의해 비로소 유류분 박탈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생전의 유류분 박탈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한 비판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나 “상속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무의미한 관념적 사고에 불과하다.

23) 이때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하는 유언의 방식을 공정증서유언으로 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2011년 개정안은 공정증서유언으로 한정하였으나, TF안은 유언의 방식을 한정하지 않았고, 정부안은 다시 이를 공정증서유언으로 한정하였다. 2011년 개정안이 그 방식을 공정증서유언으로 한정한 이유와 TF안이 이를 한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세히는 윤진수(2021), 262면 참조.

24) TF안 마련 당시 유언집행자에게 상속권 상실 청구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면 유언에 의한 지정 유언집행자가 없어 공동상속인들이 법정 유언집행자로 된 경우에 피고로 될 자가 원고로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① 법해석상 상속권 상실의 대상자인 상속인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인들만 유언집행자로 될 수 있고, ② 상속권 상실의 대상자인 상속인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민법 제1096조에 따라 법원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게 될 것이며, ③ 상속권 상실의 유언을 하는 피상속인은 대개 유언집행자를 지정해 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적격 부분을 ‘유언집행자’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도록 하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채택하였다. 【신영대 의원안】과 같이 ①, ②, ③의 방법을 병행하기로 한 것이다.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3. 사후 상속권 상실 청구의 주체와 제소기간

피상속인이 스스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 사망 후 제3자가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책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독일이나 일본은 이를 허용하지 않지만, 프랑스는 이를 허용한다.²⁵⁾ 【신영대 의원안】과 【박재호 의원안】은 모두 이를 허용하고 있다. 그 밖에 부양의무 위반 등을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개정안들 역시 피상속인 사후 제3자에 의한 상속권 박탈 청구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근본적으로 부양의무 위반이나 학대 등 범죄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박탈하는 제도를 ‘피상속인의 의사실현’이라는 사익적 제도로 파악할 것인가 또는 ‘가족 간의 유대관계 유지’라는 공익적 제도로 파악할 것인가라는 시각의 차이와 관련이 있다. 피상속인의 의사실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피상속인이 스스로 상속권 박탈을 의도하지 않았던 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 사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그 상속권 박탈을 청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골육지쟁’에 불과한 것으로서 함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반면 가족 간의 유대관계 유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양의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피상속인과의 연대가 파괴된 자를 상대로 피상속인 사후에 다

른 상속인들이 그 상속권 박탈을 청구하는 것은 상속결격에 준하여 처음부터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의의 실현’으로서 허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2011년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제도를 피상속인의 의사실현을 위한 사익적 제도로 파악하고 있었으므로, 피상속인 사후에 제3자에 의한 상속권 상실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다.²⁶⁾ 하지만 아직 유언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피상속인이 미리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양의무 불이행자 등에 대한 상속권 박탈 가능성을 완전히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 피상속인으로서 사고·자살 등 돌연한 사망으로 인해 사후의 재산처리에 관해 미리 대비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 특히 우리 가족관계의 특성상 피상속인으로서 사망 직전까지 상속인과의 관계 회복을 기대하면서 그 재산처리를 유예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TF안은 피상속인 스스로 생전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피상속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즉, 피상속인이 용서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피상속인 사망 후에도 제3자가 대신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하여 그의 추정적 의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제는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이다. 【신영대 의원안】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으로 한정하여 그 청구권을 인정한 반면,

25) 위 문장에서 독일이나 일본은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류분 박탈이나 상속인 폐제에서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상속인 사후에 제3자가 그 상속권 유무를 다투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위 문장에서 프랑스가 이를 허용한다는 것은 재판에 의한 상속결격을 염두에 두고 서술한 것이다. 다만, 프랑스법상 재판에 의한 상속결격사유는 우리가 논하고 있는 상속권 상실 사유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대일 대응 방식으로 참고하기에는 무리이다.

26) 김원태(2021), 196-197면 역시 ① 상속권 상실 청구권은 행사상·귀속상 일신전속적인 것으로서 양도·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대리에도 친하지 않다는 점, ② 법정상속인에게 상속권상실선고의 당사자적격을 부여하면 상속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③ 유언에 의한 상속권 상실 청구의 경우와 달리 피상속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상속인에게 당사자적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중 ①의 논거는 의문스러운 점이 있다. 우리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혼인·이혼·입양·파양의 무효·취소, 친생부인, 친생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사건에서도 당사자 사망 후 제3자에 의한 제소나 소송절차의 승계 등을 허용하고 있는바, 권리의 성질이 일신전속적이라는 것과 제소권자의 범위를 본인 외의 제3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서로 구별할 필요가 있다.

【박재호 의원안】은 피상속인의 친족, 이해관계인 및 검사에게 넓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TF안은 2011년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상속권 상실 제도를 사익적 제도로 파악하면서 피상속인 사후에 제3자에 의한 상속권 상실 청구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스스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하여 적용되는 보충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전제하에 원고적격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면 상속에서 직접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자, 즉 상속권 상실 신고에 따라 상속분이 증가하는 공동상속인 또는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과 동순위인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권 상실 신고에 의해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후순위 상속인과 같이 상속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원고적격을 인정한 것이다. 이 중 공동상속인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상속권 상실 사건의 소송형태에 대한 반론이 있었다. 피상속인 사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것은 결국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으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구성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한 가운데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권 행사에 따라 상속권 유무가 확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속권 상실 제도는 단순히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 분쟁을 넘어 피상속인의 의사실현을 위한 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 상속권 상실 사건은 법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박탈하는 엄중한 효과를 수반하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필요가 있어 이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구성하는 것은 피고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TF 회의 당시 스스로 부양의무를 이행한 적이 없는 후순위 상속인이 전순위 상속인의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을 공격수단으로 삼아 상속에서 이익을 얻는 것은 법감정에 반

한다는 점 및 가족 간의 무익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후순위 상속인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해서는 안 되며,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에게 공동상속인이 존재할 때에만 피상속인 사후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반론이 있었다. 하지만 상속권 상실 제도는 상속을 받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상속권이 귀속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연대를 파괴하여 상속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부터 상속권을 박탈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에게라도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원고적격을 공동상속인으로 한정하면 구체적 사안에서 타당한 해결이 이루어지기 힘든 사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었으므로, TF안은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공동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아 상속권 상실 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수 있는 경우라면 원고적격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반면 정부안은 TF안과 달리 피상속인 사후 상속권 상실 청구의 원고적격을 “배우자 또는 제100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널리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정된 경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부안의 태도에 따르면 결국 상속권 상실제도는 상속결격에 준하는 공익적 제도에 보다 가까워진다. 실제로 정부안은 그 제안이유에서 피상속인의 사적 자치와 함께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피상속인과의 윤리적·경제적 협동관계를 깨뜨리거나 가족공동체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피상속인 사후 상속권 상실 청구에서는 피상속인이 스스로 또는 유언에 의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한 경우에 비해 그 상속권 상실 사유를 제한하고자 하였던 TF안과 달리 정부안이 양자 간에 상속권 상실 사유를 동일하게 인정한 것²⁷⁾에서도 이와 같은 정부안 입안자의 인식을 간취해 낼 수 있다.

판단컨대,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학대·유기 등 살인 외

27) TF안은 ① 피상속인이 생전에 직접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미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 가족간의 연대가 파괴되었으며, 피상속인 스스로 그것이 상속 관계에 반영되기를 원한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에 반해,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의 범죄행위와 같이 비교적 경미한 유형의 결격 사안에서는 가족간 연대 파괴의 태양과 정도가 매우 다양하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상속결격 사유로 규정하기보다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기초해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 실현을 위해 바람직하다. II.1.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2011년 개정안과 TF안이 모두 상속권 상실 제도를 사익적 제도로 파악하고자 한 것은 피상속인의 사적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안과 같이 상속권 상실 제도를 상속결격에 준하는 제도로 이해하면서 원고적격을 넓게 인정하면 결과적으로 상속결격 사유 자체를 확대하는 여타의 개정안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4촌 이내 혈족이라면 누구라도 손쉽게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있었음을 이유로 상속권을 다룰 수 있게 되어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상속권 상실 사안에서는 비록 피상속인 사후의 상속권 상실 청구 사건이라도 피상속인 자신의 상속권 상실 의사가 일차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의사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권 분쟁을 둘러싼 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 간의 다툼으로 말미암아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해 상속권을 상실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안의 태도는 재고를 요한다.

물론 정부안에 따르면이라도 상속권 상실 제도에는 기존의 상속결격 제도와 달리 단기의 제소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제도를 신설할만한 실익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피상속인에 의한 상속권 상실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상속권 상실 여부를 장기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속을 둘러싼 분쟁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여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소기간을 언제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라질 수 있다. TF안은 ① 유류분 반환청구에 준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1년으로 하자는 안, ② 속려기간에 준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로 하자는 안, ③ 속려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상속인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속려기간 경과일부터 3개월로 하자는 안, ④ 유연한 운영을 위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6개월로 하자는 안 등을 검토한 결과, ① 상속권 상실 사건은 유류분 반환 사건과 달리 상속인 및 상속분의 확정에 직접적인 효과를 미치고, 상속등기·상속채무 등 다수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1년이라는 장기의 제소기간을 인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 ② 제소기간을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로 한다면 상속권 상실의 상대방인 피고가 상속을 포기할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소기간의 경과를 막기 위한 소제기가 남발될 수 있다는 점, ③ 제소기간을 원고의 속려기간 경과일부터 3개월로 한정하면 피고의 상속포기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소기간이 경과될 수 있고, 피고의 속려기간 경과일부터 3개월로 한정하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소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피고의 속려기간 3개월이 지난 후 그가 상속인이 되었음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다시 3개월 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고가 '피고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상속인이라

의 청구에 의한 상속권 상실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연대 관계 파괴의 결과인지 또는 상속인 상호 간의 재산분쟁의 결과인지가 명백하지 않다는 점, ②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공동상속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상속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자신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들어 상속권 상실 청구를 남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상속인 사후 상속권 상실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반면 정부안은 피상속인 사후에 제3자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를 피상속인 자신이 생전에 또는 유언에 의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동일하게 구성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도 사후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그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도 있고, 피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고지한 다음 그의 숙려기간이 경과하기를 기다려 그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음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다시 3개월 내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도 있다.²⁸⁾ 정부안의 태도도 이와 같다.

4. 상속권 상실 청구의 상대방

상속권 상실 청구의 상대방을 특정 집단의 상속인으로 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각 개정안은 다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령 【이언주 의원안】과 【원혜영 의원안】은 상속권 상실의 대상을 직계비속으로 한정하는 반면, 【박대출 의원안】과 【서영교 의원안】, 【이태규 의원안】은 직계존속만을, 【이석현 의원안】은 양육비 채무자인 비양육친만을 상속권 상실 청구의 상대방으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양의무 불이행 내지 중대한 범죄행위 등으로 인해 상속을 받을만한 정당한 자격이 없는 자가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을 받아가는 일이 없도록 피상속인의 사적 자치를 확대하고,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필요성은 모든 유형의 법정상속인과의 관계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것이므로, 굳이 상속권 상실 청구의 상대방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2011년 개정안과 TF안, 정부안은 모두 상속권 상실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상속인을 따로 한정하지 아니하였다.²⁹⁾ 【민홍철 의원안】, 【신영대 의원안】, 【박재호 의원안】, 【이명수 의원안】의 태도도 이와 같다.

TF안 마련 당시 현행 민법상 배우자 상속분 제도가 배우자에게 가혹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배우자에 대한 상속권 상실 청구까지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① 우리나라는 유채주의³⁰⁾로 말미암아 사실상 파탄 상태가 오랜 기간 계속된 경우라도 법률혼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채 존속하는 결과 청산의 관점에서, 부양의 관점에서도 배우자의 상속을 정당화할 수 없는 사안들이 적지 않은 반면, 이와 같은 부부간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상속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이 있었음을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부부간의 상속 관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현행법상 이혼소송 도중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면 그 이혼소송 및 그에 병합된 재산분할심판 사건은 모두 종료되고,³¹⁾ 생존배우자는 여전히 상속권을 향유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부당함을 교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생전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속을 시킬 의사 없음이 명시적으로 표현된 경우라면 상속권 상실제도를 통해서라도 그 의사를 실현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점, ③ 현실적으로 상속권 상실 사유인 부양의무 위반 사태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청산의 필요성도 높지 않아 상속권 상실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점, ④ 청산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사정판결 제도에 의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상속인이 될

28) 그 밖에 TF안 마련 당시 북한 주민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하는 경우와 같이 제소기간의 기산점이 도래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장기 제소기간 내지 절대적 제소기간을 두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단기 제소기간만 두더라도 제3자 보호 규정을 두는 이상 크게 부당한 결과를 우려는 없으므로, 장기 제소기간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기로 하였다.

29) 다만, TF 회의 당시 미성년 자녀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상속권 상실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문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상속권과 관련하여 미성년 자녀만을 위한 특칙을 둔 예가 없다는 점, 미성년 자녀를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정판결 제도에 의해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별도의 특칙을 두지 않기로 하였다.

30) 대표적으로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1)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판결.

사람”에 배우자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5. 사정판결

TF안과 정부안은 상속권 상실 청구에 대해 사정판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들과 큰 차이가 있다.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재가 증명되었더라도 상속권 상실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상속권 상실 사건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구성하는 대신 법원이 재량권을 발휘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배우자를 상대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범죄행위 등을 이유로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였고, 실제로 부양의무 위반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배우자가 그 상속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바가 많아 상속을 통해 그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청산받는 것이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에 위 조문에 기초하여 그 상속권 상실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상속권 상실 청구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이 미성년 자녀로서 부양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청구가 인용되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증가하거나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법감정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정판결 시 고려해야 하는 사정에 관해 TF안은 “상속권 상실 청구 상대방의 연령과 부양의 필요성,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대한 기여 정도,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그 밖의 사정”을 나열한 반면, 정부안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제1항 각 호의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나열하고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정부안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 청구 상대방의 연령과 부양의 필요성은 ‘그 밖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고, TF안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TF안 마련 당시 피상속인 사후 상속권 상실 청구 사건에서는 그러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고 있는 공동상속인이나 후순위

상속인의 동기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상속권 상실 사건은 피상속인과 상속권 상실 청구의 상대방 사이에 가족 간의 연대가 파괴되어 더 이상 상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의 소 청구 동기를 고려할 것을 명시한다면 공연히 상속인들 간의 감정적 다툼으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 이러한 주관적 사정은 실제로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점, 제소 동기는 ‘그 밖의 사정’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를 열거하지 않기로 하였다.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정판결을 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일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 밖에 TF 회의 당시 상속권 상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부양의무 위반의 정도나 범죄행위의 태양 등에 따라 상속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상속권 상실 선고를 내리거나 상속분의 직권 감액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개별 사건에서의 구체적 타당성 실현을 위해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이를 허용하면 공동상속인 간에 과도한 분쟁을 야기하며, 법원에 큰 부담이 되고, 상속에 관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하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비등하였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특히 뒤의 견해를 지지하는 위원들은 이를 허용하더라도 ① 피상속인 생전 청구에 의한 상속권 상실 재판에서는 일부 기각을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 가액 기타 사정 변경으로 인해 당해 상속인이 가져갈 수 있는 구체적 상속분의 액수가 법원이 상속권 상실 선고 당시 예측했던 액수와 달라질 수밖에 없어 비율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에 따른 공평의 실현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 ② 피상속인 사후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한 상속권 상실 재판에서 일부 기각은 결국 공동상속인 간의 상속분 조정 내지 상대적 기여분 제도 도입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구성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 ③ 피상속인 사후 후순위 상속인의 청구에 의한 상속권 상실 재판에서 일부 기각을 인정하면서 상실된 부분의 상속분만을 후순위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면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의 공동상속으로 인해 법정 상속

순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6. 용서의 방법

TF안과 정부안은 모두 상속권 상실에 관한 용서 조문을 두고 있다. 상속권 상실제도가 피상속인의 사적 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인 것을 고려하면 부양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이를 용서하고 여전히 그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의사의 효력을 부정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상속인이 스스로 당해 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희망한다는 것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가족으로서의 연대관계가 파괴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므로, 그의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강제적으로 박탈할 만한 정당한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 상속결격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TF 안은 피상속인이 상속결격 또는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용서의 의사표시도 무방식의 행위로 구성하여 가족관계의 원만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³²⁾

상속권 상실 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용서의 효력을 인정할 필요성은 동일하게 인정된다.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는 종의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인적 관계는 피상속인 사망시까지 계속 변화하는 것인 이상 상속권 상실 판결 확정 후에도 용서가 가능하도록 하여 피상속인에게 사실상 상속권 상실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판결 확정 후 무방식의 용서를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면 피상속인 사후에 용서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였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과도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의사표시의 진의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 피상속인의 경솔한 의사표시에 의해 상속인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 판결 확정 후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에 의

해서만 용서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유언을 하는 경우에는 굳이 공정증서유언과 별도로 사서증서 인증을 받지 않고도 용서의 의사표시가 가능하도록 공정증서유언에 의한 용서도 함께 허용하였다.

하지만 정부안은 TF안과 달리 상속결격에 관해서는 용서의 조문을 두지 않는 한편, 판결 확정 전이라도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 또는 공정증서유언에 의해서만 용서가 가능하도록 하여, 용서의 가능성을 대폭 축소하고 있다. 상속권 상실 제도의 법적 성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피상속인의 사적 자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재고를 요한다. 특히 판결 확정 전에 무방식의 용서를 허용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 상속권 상실 사유를 용서한 경우에 그의 사후에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권 상실 청구를 봉쇄함으로써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사후 상속권 상실 청구가 남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III. 정부안에 대한 비판과 그 당부

1. 일본의 상속인 폐제 제도와의 관계

정부안에 대해 일부 견해는 상속권 상실제도가 일본의 가독상속 제도에 연원을 두고 있는 상속인 폐제 규정을 모방한 것으로서 굳이 우리나라가 이러한 상속인 폐제 제도를 모델로 삼을 필요가 없다고 비판한다. 정부안은 피상속인의 생전의 의사표시 또는 유언에 기초하여 법원의 재판을 거쳐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외관상 일본의 상속인 폐제 제도와 유사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TF안이 제시한 상속권 상실제도는 일본식의 상속인 폐제 제도를 본떠 만든 것이 아니다. 부양의무 불이행 내지 중대한 범죄행

32) 다만, TF 회의 당시 상속결격에 대해서까지 용서 제도를 두는 경우에 상속결격자가 피상속인에게 용서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우려가 있다는 점, 특히 용서의 의사표시를 무방식으로 규정하면 이를 용서로 볼 것인지 또는 상속과 무관한 특별한 증여로 볼 것인지를 둘러싸고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하는 견해가 있었다.

위 등으로 인해 상속을 받을만한 정당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을 받아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롭게 고안된 제도이다. 이미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파괴되어 유류분까지 박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그 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적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되, 피상속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상속인이 부당하게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재판을 거쳐 그 상속권 상실의 효과가 확정되게 하는 한편, 상속권 상실을 둘러싼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분쟁은 피상속인 생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화하고, 다만 피상속인이 미리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대비하여 피상속인 사후에 보충적으로 제3자가 그 소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요컨대, 상속권 상실 제도는 독일식의 유류분 박탈 제도와 프랑스식의 재판에 의한 상속결격 제도, 오스트리아의 유류분 박탈의 상속결격에 의한 보완 제도를 결합하여 각 제도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우리 상속법제와 실정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의사실현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TF안이 정부안으로 수정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의사실현을 위한 제도보다 유대관계 파괴에 대한 민사적 제재로서의 성격이 보다 강화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제도의 본질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부안이 일본의 상속인 폐제 제도를 따른 것을 전제로 정부안 제1004조의2 제1항과 제2항을 분리하고, '상속권 상실' 대신 '추정상속인의 폐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는 견해는 따르기 어렵다. 또한 위 견해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상속권 상실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정부안 제1004조의2 제3항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생전의 의사표시 또는 유언에 기초하여 추정상속인 폐제를 허용하고 있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과 그 법적 성격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서 양 제도를 상속권 상실이라는 동일한 제목하에 규정하는 것은 체계적인 입법이 아니라고 비판하나, 이 역시 상속권 상실제도의 고안 취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것이다. 다만, 현재 정부안과 같이 피상속인 사후의 상속권 상실 청구의 원고적격과 상실사유를 넓히고, 상속권 상실과 용서의 의사표시 간의 관계를 모호하게 규정

하면 향후에도 피상속인 생전의 상속권 상실제도와 사후의 상속권 상실제도 간의 관계에 대한 위와 같은 오해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TF안과 같이 피상속인 사후의 상속권 상실 제도를 보충적으로 구성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무방식으로라도 용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라면 사후에 제3자가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2. 독일의 유류분 박탈 제도와와의 관계

일부 견해는 피상속인의 의사실현을 위해서라면 굳이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할 필요 없이 독일식의 유류분 박탈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유언에 의한 유류분 박탈 제도에 수반되는 증명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II.2.에서 서술한 바 있으므로 반복하지 않는다. 본항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상속을 받기에 부적절한 상속인으로부터 박탈되어야 하는 것은 상속권인가 또는 유류분인가 하는 점이다. II.2.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상속인에게 상속시키기를 희망하지 않는 피상속인은 생전의 증여, 유증 기타의 처분을 통해 사실상 상속을 배제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이 그 유류분에 구속되는가가 문제될 뿐이므로, 유류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독일법과 달리 우리 법제 하에서는 그러한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훨씬 간명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에서는 유언에 의한 상속인 지정이 허용된다.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나(이른바 '추정상속인') 유언에 의해 다른 사람이 상속인으로 지정된 결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자는 상속권을 주장하지 못하고 유류분(Pflichtteil)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다(독일 민법 제2303조). 이러한 사안에서 상속권과 유류분은 완전히 분리되며, 유류분권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겸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의 추정상속인을 상속으로부터 배제하고자 하는 피상속인의 의사는 다른 사람을 상속인으로 지정하면서 추정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언에 의한 상속인 지정이 허용되지 않고, 오로지 상속인만이 유류분권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을 박탈하는 의사 표시를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가 잔존하게 된다. 이 경우 유류분을 박탈당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유증이나 생전증여에 의해 처분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 여전히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이나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상속채무를 분담하는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우리 법제 하에서 특정의 추정상속인을 상속으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려면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권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둘째, 독일에서도 상속인의 지위와 유류분권리자로서의 지위가 언제나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가령 공동상속인 지정으로 인해 법정상속인이 유류분에 달하지 못하는 상속분을 받게 된 경우에 법정상속인은 추가유류분(Zusatzpflichtteil)을(독일 민법 제2305조), 피상속인의 증여 등으로 인해 법정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에 법정상속인은 유류분보충청구권(Pflichtteilsergänzungsanspruch)을 행사할 수 있다(독일 민법 제2325조). 이 경우에 법정상속인은 상속인의 지위와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를 겸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상황은 우리나라와 전혀 다르다. 우리 민법상 유류분권자로서의 지위(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는 법정상속인으로서의 지위(법정상속분) 안에 포함되는 반면, 독일법은 피상속인의 처분에 의해 정해진 상속권(유언상속분) 외에 유류분권(유언상속분과 법정상속분의 1/2 간의 차액)을 추가로 인정하는 법적 구성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상속인이 스스로 유류분을 주장하는 경우라도 상속분과 유류분 개념은 여전히 분리되며, 따라서 상속권을 유지시킨 채 유류분만을 박탈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다.³³⁾ 이는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이 가능한 독일법 특유의 구조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같이 상속분과 유류분을 분리하여 유류분만을 박탈하는 것이 개념상 불가능하다. 유류분을 박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권 자체를 상

실시킬 수밖에 없다.

셋째, 독일에서는 유언에 의한 상속분 박탈이 허용된다(독일 민법 제1938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유류분이 아니라 상속분 자체를 박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지정·유증·증여 등을 하지 않아 유류분 자체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도 부양의무 불이행 등 경미한 유형의 유대관계 파괴 사안에서 피상속인의 의사 실현이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상속분 박탈시에는 유류분 박탈의 경우와 달리 박탈 사유에 관한 규정도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유류분은 법에 의해 보장되는 것으로서 이를 박탈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 반면,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기초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사인처분만으로 이를 0으로 만드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는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박탈의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언에 의한 상속권 박탈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언에 의한 상속분 박탈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독일식의 유류분 박탈 제도만을 도입한다면 유증이나 증여와 같은 피상속인의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유류분 침해 여부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사안에서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중대한 범죄행위 등을 한 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도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박탈 제도가 아니라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3. 소송 형태와 용서 제도

일부 견해는 정부안이 “① 피상속인의 생전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개정법률안 제1004조의2제1항), ②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청구할 때는 상속권 상실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개정법률안 제1004조의2제2항), ③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법

33) 독일법상 상속인이 유증의무의 이행을 면하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고, 대신 유류분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 역시 이러한 법적 구성에 기초한 것이다(독일 민법 제2306조 제1항).

정상속인이 청구할 때는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법률안 제1004조의2제3항) 등과 같은 표현으로 일관성 없이 규정”하여 같은 유형의 사건에 대해 성질이 다른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가정법원은 피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는 표현은 전형적인 비송사건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민법은 가사소송사건인지 또는 가사비송사건인지에 따라 그 문장구조를 엄밀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가령 민법 제845조는 친생추정이 중복되는 경우에 부의 결정에 관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문에 따른 ‘부를 정하는 소’가 현행법상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다. 설령 현행 민법 조문들이 사건 유형별로 문장구조를 달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³⁴⁾ 민법의 입법자가 그러한 구별 의도를 가지고 민법 조문을 축조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민법 제정 당시에는 아직 현행 「가사소송법」과 같은 사건 유형 분류 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축조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물론 우리가 반드시 과거 입법자의 주관적 의사에 구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법체계상 가사사건의 유형을 정하는 것은 「가사소송법」의 역할이지, 민법의 역할이 아닌 이상 민법 조문의 표현을 기준으로 가사사건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가사사건의 성격에 따라 민법 조문의 표현을 일치시켜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위 견해는 상속권 상실 사유에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등과 같이 법원의 후견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평가개념이 사용되고 있는 점, 상속권 상실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혼이나 파양 등과 같이 신분관계 그 자체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이 아니라 추정상속인의 기대권 내지 조건부 재산취득권 상실에 관한 사건

이라는 점 등을 들어 상속권 상실 사건을 가사소송사건이 아닌 가사비송사건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요건에 평가개념이 사용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법원에 의한 합목적적 재량권 행사가 필요한 비송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재판상 파양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05조 등에도 불구하고 재판상 이혼 및 재판상 파양 사건이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는 명백하다. 상속권 상실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사정판결 제도를 둔 것은 오히려 이것이 가사소송사건으로서 법원의 합목적적 재량에 기초한 후견적 개입이 예외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선언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가사소송법상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이 혼인관계 또는 친자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관한 사건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속권 상실과 같은 재산관계 관련 사건을 이에 편입시키는 것이 다소 생경하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 신분관계 사건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어떠한 사건을 가사소송사건으로 할 것인가 가사비송사건으로 할 것인가는 ‘쟁송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일이며, 주문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은 아니다. 물론 현재 가사소송법상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일반적인 비송사건에 비해 쟁송적 성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특징에도 불구하고 현행 가사소송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에서 상대방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 법관이 청구취지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는 유형의 사건이나 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부적절한 유형의 사

34) 실제로는 민법이 가사사건 유형별로 문장구조를 달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각주를 부기한다. 가령 현행 민법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인 이혼취소(민법 제838조)·재판상 이혼(민법 제840조)·입양취소(민법 제884조)·재판상 파양(민법 제905조) 등과 라류 가사비송사건인 친생부인 허가청구(민법 제854조의2)·인지허가청구(민법 제855조의2),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부부재산약정상 재산관리자 변경(민법 제829조 제3항)·단독친권자 사망시 친권자 지정(민법 제909조의2) 등 사건에 공히 “(…)을 청구할 수 있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건들만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은 이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구서 부분 송달, 증거조사 절차, 즉시항고 등에서 상대방의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의 장치를 마련한 바 있으나,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상속권 상실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

상대방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상속권 상실 사건을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구성하는 방법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상속권 상실의 재판은 상속분·상속등기·상속채무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정상속인들과 상속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다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인용확정판결에 대세적 효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구성하여 그 효력을 제3자에게까지 확장하여야 할 것이다(가사소송법 제21조). 또한 우리나라는 유언에 의한 상속인 지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혼인 또는 혈연 관계에 기초한 친족에게만 법정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한다. 상속권 상실 신고는 단순히 유류분이라는 재산법적 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상속인의 상속권 자체를 박탈시키는 제도이다. 우리 법상 상속권은 단순히 특정 상속재산에 관한 공유지분의 집합을 넘어 상속을 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권한,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 민법 제1011조에 따라 공동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괄하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전반을 의미하는 바, 상속권 상실 재판이 확정되는 순간 법정상속인은 상속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되므로, 이를 신분관계의 변동에 관한 사건이 아니라고 단언할 바도 아니다.

이와 같이 상속권 상실 사건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구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TF안과 정부안의 용서 제도와 조화를 이룰 수 없다는 비판이 있다. 상속권 상실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상속인의 용서라는 사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확정판결의 효력을 잃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사의 영역에서 재판은 당사자들의 권리 실현을 위

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 만큼, 판결 확정 후 발생한 사정에 의해 더 이상 그 권리 실현이 불필요 내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판결의 효력이 법적으로 또는 현실적으로 상실될 수 있다. 일부 견해는 정부안이 상속권 상실 사건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구성하고 있는 이상 대세적 효력 있는 형성판결로서 상속권 상실 재판이 확정된 후라면 그 판결의 취소에도 법원의 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상속권 상실 신고 취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재심의 소로만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심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자’가 그 판결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제도이며, 청구인용판결을 받은 자가 스스로 그 판결의 효력을 제거하기 위해 재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류 가사소송사건에서 청구인용판결이 대세적 효력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하여 용서에 의해 그 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여 그 의사의 존재와 진의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IV. 결론

정부안에 대한 혼한 오해 중의 하나는 위 안이 위 정부안이 모 유명 연예인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제출된 입법 청원³⁵⁾과 시류에 밀려 즉흥적으로 마련된 졸속입법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속권 상실 신고 제도는 2010년 천안함 사태 당시 28년간 자녀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던 생모가 유족의 지위에서 거액의 군인사망보상금을 받아간 것이 알려지면서 이미 그 도입 가능성과 도입방안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법무부에서 이미 2011년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입양허가제, 성년후견제, 이혼 후 단독친권자 사망시 친권자 지정 제도(이른바 ‘최진실법’) 도입 등 중요한 가족법 개정 작업이 잇달아 진행되면서 위 2011년 개정안은 적시에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경주리 조트 사건·세월호 사건·조현병 역주행 사건 등 유사사례

35) 청원번호 제2000212호(청원일자: 2020. 4. 3., 청원자: 노종언 외 10만인).

가 거듭 발생하였으며, 언론에서만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꾸준히 그 입법의 공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위 자살 사건의 발생 전에도 관련 개정안들이 국회에 여러 건 발의 되어 있었던 것, 2018년에 이미 이혼 후 딸에 대해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직계존속에게 딸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청구권 및 손해배상청구권 등에 관한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선고되었던 것 등은 이 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일회적인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TF안과 정부안은 그간의 학계에서의 연구성과와 비교법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독일식의 유류분 박탈 제도와 프랑스식의 재판에 의한 상속결격 제도, 오스트리아의 유류분 박탈의 상속결격에 의한 보완 제도의 각 단점을 최소화하고, 우리 상속 법제와 실정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속권 상실제도를 고안하고자 하였다. 이미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파괴되어 유류분까지 박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그 상속인에 대한 상속을 희망하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사적 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되, 피상속인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상속인이 부당하게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법원의 재판을 거쳐 그 상속권 상실의 효과가 확정되게 하는 한편, 상속권 상실을 둘러싼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분쟁은 피상속인 생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 책임의 원칙을 강화하고, 다만 피상

속인이 미리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었던 경우에 대비하여 피상속인 사후에 보충적으로 제3자가 그 소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를 입안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가 반영될 수밖에 없으며, 쟁점별로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속권 상실과 같이 법정상속 제도의 근간을 건드리는 제도를 도입할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충분한 토론과 숙고를 통해 위 제도의 한계가 보완되어 최상의 결과물로서 위 제도가 우리 민법의 일부로 편입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문에서 논한 각 쟁점 외에 정부안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권 상실 사유의 적절성, 상속권 상실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특히 정부안이 TF안과 달리 상속권 상실을 대습상속 개시 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결격의 경우까지 대습상속 개시 사유에서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³⁶⁾은 우리 상속법의 주요한 원리 중 하나인 ‘개인 책임의 원리’를 폐기하는 것으로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요한다는 점만 우선 부기하고자 한다.

36) TF 회의 당시 상속권 상실에 상속포기에 준하는 효과를 부여하여 상속권이 상실된 상속인의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다른 공동 상속인이 없다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상속권 상실은 사실상 ‘재판에 의한 상속결격’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경우에 상속결격에 준하여 대습상속이 개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였다. 【신영대 의원안】, 【박재호 의원안】의 태도도 이와 같다. 상속권 상실을 원인으로 대습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피대습인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① 현행 민법이 배우자에게 대습상속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상속권 상실의 경우에도 배우자를 대습상속인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고, 배우자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배우자에 의한 대습상속을 원치 않는 피상속인은 미리 배우자에 대해서도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배우자를 대습상속인의 지위로부터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와 ② 비교법적으로 배우자에게 대습상속권을 인정한 예가 거의 없고, 상속권 상실 선고 후 상속권을 상실당한 자와 경제적 동일체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가 대습상속을 받도록 한다면 사실상 상속권 상실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배우자에게 대습상속권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였으나, ②의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이 약간 더 우세하였으므로, 상속권 상실에서 피대습인의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한편, 이 경우 상속결격자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수미일관되므로, 상속결격자의 배우자에게도 대습상속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피대습자의 배우자에게 대습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로 윤진수(2021), 268-269면; 이동진(2021), 96면 각주 9); 정구태(2020), 257-258면 참조.

【부록: 정부안】

정 부 안

제1004조의2(상속권상실신고) ①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1.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가.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나. 제826조에 따른 부양의무

다.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

2.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3.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을 학대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제1항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제100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제1항 각 호의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⑤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⑥ 가정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⑦ 가정법원이 제6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4조의3(용서) ① 피상속인이 제1004조의2 제1항 각호에 따른 상속권 상실 사유에 대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을 용서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지 못하고, 같은 사유로 이미 상속권 상실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② 제1항의 용서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으로 하거나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하여야 한다.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0조 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한 사람의 순위에 같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생략)

② 제1001조의 경우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같은 조에 따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10조(대습상속분) ① 제1001조에 따라 사망한 사람을 같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일 때에는 그들의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정한다.

③ 제1003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배우자의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

컴퓨터 통신 · 인터넷 상담

1993년 컴퓨터 이용한 내담자 관리 등 시작

1997년 컴퓨터 통신 이용한 법률상담 개시

컴퓨터 통신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다. 전화 모델을 이용한 초기 컴퓨터 통신은 지금 보면 허술하기도 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처음 컴퓨터 통신이 등장했을 때에 그 변화는 참으로 엄청난 것이었다. 컴퓨터 통신은 통신기능 이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새로운 여론형성 기관으로 작용하는 또 하나의 생활문화였던 것이다. 1993년부터 컴퓨터를 이용해 내담자 관리 등을 시작하고 있던 상담소는 이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1997년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법률상담을 개시하게 되었다.

컴퓨터 통신 사업체 '삼성 PCS 유니텔'과 게시판 작업을 추진하여 8월 11일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을 개설했다. 게시판은 크게 상담소를 안내 홍보하는 난, 일반 상담사례를 게시하는 난, 상담편지 난으로 구성하여 상담소 안내 · 홍보, 상담소 본부와 지부소식, 가정상담지, 관련 기관 안내 등을 볼 수 있도록 했고, 일반 상담사례의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의 각 사례를 보여주었다.

한편 1998년 1월 7일부터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상담위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전화상담을 개설했다. 상담소는 가정문제의 복잡하고 미묘한 성격과 상담의 원칙상 면접상담을 중심으로 운영해 왔는데, 전화상담을 개설한 이후에도 전화로는 주로 면접상담을 안내하도록 하는 큰

원칙에는 변함이 없었으나 전화상담 요청이 폭주하는데다 시간과 거리상의 제약으로 상담소를 찾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내용별로 융통성 있게 전화상담을 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담소의 전산화 작업에 힘쓰던 상담소는 1997년 12월 낡은 기존 시스템을 교체하고 1998년 1월부터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가동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상담에 따른 각종 데이터와 자료의 이용이 훨씬 간편해지고 풍부해졌다. 전산 시스템의 교체는 상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상담활동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운 시스템은 검색조건이 다양해져 두 번 이상 상담하는 내담자의 경우, 기존 시스템 보다 다양한 경로로 상담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자료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세분화된 자료를 수록할 수 있어 특히 통계 부분에서 그 효과를 보게 되었다.

또한 컴퓨터 통신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인터넷이 상용화하면서 1999년 1월부터는 인터넷 연합뉴스에 가정문제 상담실을 개설하여 본격적으로 온라인 시대에 합류하기 시작하였다.

이렇듯 상담소는 사회 변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상담소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계속하고 있었다.

편집부

* 상담소는 지난 2016년을 창립 60주년의 해로 보내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법률구조 기관으로써 자부심을 가지고 백년을 향해 나아간다는 전망을 세운 바 있다. 이러한 전망의 토대로 삼고자 상담소의 역사를 바로 알고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소의 연대기를 연재한다. 상담소는 지난 2009년 「변민하는 이웃과 함께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50년사」를 펴낸 바 있으며, 이 연재는 이를 기초자료로 하였다.



음주문제가 갈등의 중대한 요인인 경우 많아,
음주문제에 대한 숙고가 필요

2019버2***폭행 서울가정법원

상담진행

행위자(남편) 개별상담 5회, 전화상담 2회
피해자(아내) 개별상담 2회, 전화상담 1회
부부상담 5회 등 15회

상담기간

2019. 12. 6. ~ 2020. 10. 27

상담경과

행위자와 피해자 모두 몽골인이다. 부부는 한국에서 만나 2010년에 결혼하였고, 부부 사이에 2남 1녀(8세, 6세, 9개월)가 있다. 둘째 아이가 미국아로 태어나 지속적으로 치료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행위자는 이삿집센터 차 운전, 피해자는 해외송금업체에서 몽골인 고객 상담을 하는데 자녀 양육 때문에 휴직하였다가 2019년 10월에 복직하였다. 부부는 둘째 아이 치료를 위해서라도 의료기술이 좋은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고 하였다.

행위자는 2019년 10월 사건당일 피해자가 자신의 젓가락을 밥상에 올려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1회 넘어뜨리고 방안에 있던 아이 의자를 집어던지는 시늉을 한 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6개월간 본소에 상담위탁 되었다.

피해자는 갈등원인으로 경제적 어려움, 행위자의 음주문제, 대화하기 어려운 점 등을 꼽았으며, 행위자가 술을 줄

이고 아이들을 잘 보듬어주기를 바랐다. 행위자는 현재 부부관계의 점수를 10점 만점에 6~7점으로 평가하고 보완할 점으로 자신의 음주문제 개선과 피해자가 잔소리 하지 않기를 꼽았다. 사건 발생 이후 행위자는 가사분담 노력을 하여 피해자의 부부관계 만족도 평가가 2~3점으로 향상되었는데, 행위자의 상담기간 중 실천과제로 음주문제 개선, 집안일 분담, 아이돌보기 등을 정하였다.

그러나 상담기간 중 행위자의 음주문제로 부부가 충돌하는 일이 있었다. 피해자는 행위자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하였고, 행위자는 피해자의 기대수준이 너무 높다고 하여 부부간 대화 후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과제를 부과하였다. 이에 대한 점검 결과 행위자가 코로나19로 일이 적어지면서 일찍 귀가하고 음주를 하지 않아 피해자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행위자는 앞으로 음주를 하지 않겠지만 음주를 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 피해자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겠다고 약속하였고 피해자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던 중 몽골에 계시는 행위자의 할머니가 별세하였고 가보지 못한 행위자가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지켜보면서 폭력재발은 없었다.

종결상담 시 확인 결과, 폭언, 폭력은 재발되지 않았다. 좋아진 점으로 행위자는 피해자의 잔소리가 준 점을, 피해자는 행위자의 빠른 귀가와 음주문제 개선 등을 꼽았고 특히 15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만 저녁식사를 하였다고 만족감을 표하였다. 피해자는 부부관계 만족도를 사건당시는 10점 만점에 2~3점, 현재는 7점으로 평가하였고, 향후 바라는 바로 행위자가 술을 덜 마시고 일찍 귀가하기, 건강한 대화하기를 꼽았으며 행위자는 실천을 약속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



이 혼 1

● 이혼 절차

Q 문 1 | 이혼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혹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재판상 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입니다.

● 협의이혼의 절차

Q 문 2 | 남편과 협의이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A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해야 하며, 양육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4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4항).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지참하고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과 이혼신고서를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법원에는 부부가 함께 출석해야 하지만 이혼신고는 어느 일방만 해도 됩니다(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2항, 제3항).

- 가정법률상담 사례집 「어떻게 할까요」 중에서



Q 저는 부모님의 이혼 후 어려서부터 보육시설에서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후 보육시설을 퇴소하고 회사를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할수록 어렸을 때 저를 보육시설에 맡기고 지금까지 연락도 되지 않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있는 것이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저의 성과 본을 아버지, 어머니와 엮이지 않는 제 3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성과 본을 제 3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혼인 중 출생자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다만 혼인신

고 당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판례에서는 계부나 양부, 어머니의 성과 본이 아닌 제 3의 성과 본으로의 변경은 궁극적으로 자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8. 4. 13. 선고 2017브30060 결정 참조). 즉 제 3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귀하의 성과 본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를 넘어 현재나 장래의 가정, 사회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이미 성인으로 기존의 성과 본을 사용하여 오랜 기간 사회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최근 법원에서도 제 3의 성과 본으로의 변경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성과 본의 창설과 유사한 면이 있어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귀하의 제 3의 성과 본 변경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수진 상담위원

굿나잇 마미

감독 베로니카 프랜즈, 스베린 피알라

출연 수잔느 웨스트, 루카스 슈와즈, 일라이어스 슈와즈



오스트리아의 외딴 마을, 아홉 살짜리 쌍둥이 형제 엘리야스와 루카스는 성형수술을 받으러 떠난 엄마를 기다리며 집을 지키고 있다. 그리고 엄마가 돌아왔다. 반갑게 이층으로 뛰어오르며 엄마를 부르던 소년들은 우뚝 멈춰 선다. 얼굴에 온통 붕대를 감은 엄마는 아주 낯설다. 손님도 받지 말고 외출도 하지 말고 집안에서는 절대 정숙하라며 온갖 새로운 규칙들을 열거하는 엄마는, 병원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장가를 불러주던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이 사람은 싸늘하고 신경질적이며 아이들을 미워하며, 심지어 고양이까지 죽이는 냉혈한이다. 엘리야스와 루카스는 조금씩, 이 사람이 엄마인 척하는 타인일 것이라고 의심하기 시작한다.

어떤 면에선 김지운 감독의 <장화, 홍련>을 연상시킨다.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라곤 서로밖에 없는 어린 형제/자매들의 강렬한 유대감,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의 차가운 시선과 부모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이들의 공허한 눈빛, 집에 그야말로 ‘붙들린’ 것처럼 집안에서 거의 빠져나가지 않는 인물들(과 카메라). 영화 초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만 텅그러니 남아 있던 집은 어른들이 간섭할 수 없는 무인지대, 아이들만 뛰어노는 텅 빈 공원 같은 느낌이 었다. 하지만 엄마가 돌아오고 나서부터 세련된 가구로 가득한 이 널찍한 집은 그 자체로 낯선 미로처럼 작동한다. 아이들은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없고 지저분하게 물건을 늘어놓을 수 없으며 햇빛을 차단해야 한다. 아이들은 엄마를 만나려면 단단히 닫혀 있는 문 앞에서 정중하게 노크를 해야만 한다. 지하실 구석에는 그들이 몰래 키우던 고양이의 시체가 박혀 있다. 엄마는 자기 침실 문을 안에서 잠고, 아이들 침실 문을 밖에서 잠근다. 집은 엄마처럼 불친절해졌다.

무엇 때문인지 불분명한 이유로 성형수술을 받은 엄마가 돌아왔을 때, 아이들은 달라진 외양이 달라진 내면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생각한다. 성형수술의 흔적, 아마도 여기저기 얼굴에 그어졌을 실밥과 핏줄이 터진 흔적 등이 엄마의 얼굴을 뒤덮고 있겠지만, 붕대는 그것을 가리면서 동시에 더 끔찍한 상상력을 가능케 한다. 아이들 눈에는 붕대를 감은 엄마가 괴물처럼 보인다. 이 엄마는 예전 엄마처럼 다정하고 따뜻하지 않다. 동생 루카스에게는 식사도 차려주지



않을 때가 부지기수이며 형 엘리아스에게 손찌검까지 가하며 소리를 질러댄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더 이상은 못 참겠어”라고 차갑게 내뱉는다. 엄마를 엿듣고 또 엿보던 어린 형제는 생각한다. 가족 앨범에서 아빠의 사진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처럼(‘우리의 결혼식’이라고 태그가 달린 페이지는 텅 비었다), 부모의 별거 이후 아빠의 존재가 ‘우리 가족’으로부터 빠르게 삭제당하고 부정당한 것처럼, 엄마도 혹시 누군가에게 납치당한 건 아닐까? 아이들은 가족 앨범에서 발견한 낯선 여자의 사진을 주목한다. 엄마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선글라스를 낀 채 엄마 옆에 나란히 앉아 있는 이 여자는 누굴까? 혹시 엄마에게 숨겨진 쌍둥이 형제가 있었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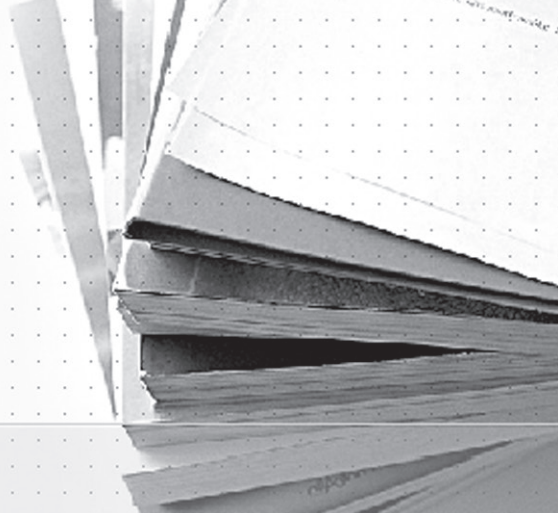
엄마라면 자신의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모를 리 없다. 엄마라면 자신이 ‘엄마’라는 사실을 언제나 자각하고 있어야 한다. 엄마라면 냉동 피자도 냉장고를 가득 채우

면 안 된다(‘집밥’을 차려주는 게 엄마의 의무다)…. 아이들 이라면 응당 어른에게 순종적이며 남을 의심할 줄 모르는 순진한 존재일 것이라는 기대, 엄마라면 응당 아이들의 진심을 선협적으로 인지하고 조건 없이 이해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기대. 아이들이 엄마에게 요구하는 바가 지금의 엄마를 완전히 부정하는 수준으로 진행될수록 상황은 끔찍하게 엇나가기 시작한다.

영화의 결말은 대단히 끔찍하다. 2014년 이 영화가 처음 소개됐을 당시에도 호불호가 선명하게 갈렸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우상 파괴에 관심 있는 이들 이라면 이 숨막히는 심리 스릴러를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다. <굿나잇 마미>는 현재 스트리밍 플랫폼 왓차(watcha.com)에서 볼 수 있다.

김용언 영화칼럼니스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한나 아렌트 지음

김선옥 옮김, 정화열 해제

한길사, 2021(제1판 제38쇄)



"시집간 딸이 잘 사는지 모르겠다." "아들놈이 체력장을 잘 치렀는지 모르겠다."는 등 자신의 가족들에 대한 애정 어린 말들을 주고받았으며 본인에게도 이야기 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고문과 폭력적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이 개인의 가족들에게는 인간적인 사랑을 줄 수 있던 말입니까?

한나 아렌트가 남긴 '악의 평범성'을 떠올릴 때마다 거의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남영동』의 한 부분이다. 이제 고인이 된 김근태 민청련 의장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자신이 당한 고문에 대한 기억을 풀어 놓은 것이다. 1998년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되고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상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상담소 복도 등에서 행위자들을 종종 볼 수 있다. 상담위탁 보호처분을 받아 상담소를 찾은 정도의 폭력이란 뺨 몇 대, 접시 몇 장 깨진 게 아니다. 전치 몇 주, 유혈이 난자, 생전 어디에서도 들어 보지 못한 욕설 등의 총합이다. 내가 당혹스러운 것은 그 행위자들이 그냥 오늘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아래층 사람 같아서였다. 하물며 대공분실의 고문 기술자나 나아가 유대인 학살의 주범이면 어떨까, 즐겨 보았던 미국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에서 연합군이 아우슈비츠를 발견하는 장면을 잊을 수 없다. 군인이나 관리자들을 이미 도주하였고 그 엄청난 살육의 현장을 모른 채하며 일상을 유지하던 동네 주민들을 동원해 빼만 남은 시신들을 수습하게 하는 장면에서도 '악의 평범성'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어떤 역사에서는 눈 감은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아이히만의 재판에 대한 보고를 통해 악의 평범성을 이야기하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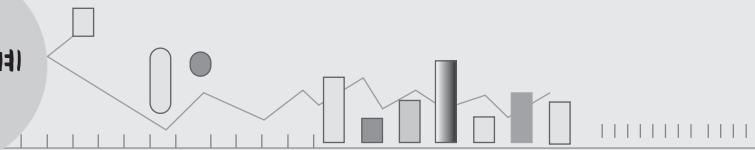
1960년, 이스라엘의 첩보 기관 모사드는 나치 독

일의 친위대 장교 겸 홀로코스트의 실무 책임자였던 아돌프 아이히만을 체포해 예루살렘으로 압송하여 기소했고 1961년 4월 11일 공개재판이 열렸다. 미국에 망명 중이었던 한나 아렌트는 미국의 교양잡지 『뉴요커』의 재정적 재원을 받아 특파원 자격으로 이 재판을 참관하여 1963년 2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반적인 보고 :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하였다. 이후 1965년 후기를 덧붙여 책으로 출간한 것이다. 400쪽이 넘는 책을 몇 줄로 설명할 수 없지만 '악의 평범성이란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 속 악행은 광신자나 반사회성 인격장애자들이 아니라 국가에 순응하며 자신들의 행동을 보통이라고 여기게 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진다.'고 아렌트는 주장했다.

전두환이 죽은 즈음 다시 생각한다. 독일 메르켈 전 총리는 사임을 앞두고도 유대인 학살에 대해 거듭 사과했는데, 우리 옆 나라의 야스쿠니 신사는 아직도 건재하고 그 나라의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거기에 공물을 보내고 참배를 한다. 이렇게 제대로 된 사과 한 번도 못 받은 이 나라에는 여전히 토착왜구가 넘쳐 나고. 이 가슴 답답한 상황을 설명해주는 말이라도 있으니 이 말을 역사에 남긴 이가 아렌트인 것이다.

독일 하노버에서 태어난 철학자 한나 아렌트(1906~75)는 마르부르크 대학에서 볼트만과 하이데거에게 배웠고, (나치 부역자이기도 했던) 하이데거와 사랑에 빠지기도 했으나 결별하고 하이델베르크로 가서 야스퍼스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첫 번째 주저인 『전체주의의 기원』의 발간과 더불어 본격적인 정치사상가의 길을 걸었다.

이숙현 편집부장



2021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 2022년도 사업계획 등 검토

상담소의 2021년도 정기 후기 이사회가 지난 11월 25일 본소 대강의실에서 열렸다. 박양덕, 김의재, 장명수, 조대연, 김영옥, 김명순, 곽배희, 김병후 이사 및 한미영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차명희 이사장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는 개회, 전회 회의록 낭독, 안건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건토의에서는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졌다. 또한 기타 안건으로 상담소 인사 규정의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와 의결이 이루어졌다. (관련사진 2면)

곽배희 소장, '김활란 여성지도자상' 수상

호주제 폐지 운동 등 주도하여

평등한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본 상담소 곽배희 소장이 지난 11월 9일 서울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김활란 여성지도자상'을 수상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허명 회장)는 이날 '위대한 여성,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제56회 전국여성대회에서 우리 사회의 여성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한 이들에게 여성상을 수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본소 곽배희 소장의 김활란 여성지도자상 수상과 관련하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으로서 50여 년 간 상담소를 이끌며 여성 권익 신장에 헌신하였으며, 여성차별의 근간이 되었던 호주제 폐지를 주도하여 여성에게 불합리한 가족법 개정 등 입법운동에도 끊임없이 노력하여 양성평등한 민주사회 발전에 헌신의 힘을 다함으로써 여성운동사에 길이 남도록 기여한 바가 크다'며 선정의 이유를 밝혔다.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

이들에 걸쳐 강의와 상담 및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나들이

본소는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11월 24일, 26일 삼성생명·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후원으로 비혼모가정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양일간에 걸쳐 진행된 비혼모가정 워크숍에는 비혼모 10명과 비혼모 시설 종사자 등 총 16명이 참석하였다.

11월 24일에는 비혼모자 기본생활시설인 애란원에서 비혼모가정이 꼭 알아야 하는 가족법 강의와 상담이 있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정해 출생신고 하는 것에서부터 어려움과 혼란을 느끼는 비혼모들을 위한 이날 강의는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을 정하는 방법,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등을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강의 후에는 자녀의 성변경, 인지, 양육비 청구 등의 법률 상담이 있었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지

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상담소에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이어서 26일에는 용인 에버랜드에서 휴식과 체험활동이 진행되어 출산과 육아로 지친 엄마들이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출장 상담 및 법교육

법의 생활화 운동의 일환으로 본소의 법 교육이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출장 법 교육은 가족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가정폭력특례법 등을 주제로 하며, 본소 상담위원들의 상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충실한 강의로 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본소에서의 실습도 방역을 철저히 하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으며, 순회상담의 경우도 상당 부분을 전화상담으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다.

2021년 11월 상담통계

총 건수 6,007

법률상담 (5,223)

면접	전화	인터넷	순회
913	4,208	92	10

화해조정	소장 등 서류작성	소송구조
629	50	105

• 인터넷 정보 이용 33,979 건

2021년 11월 한달 간 상담소에서 진행한 총 상담건수는 6,007건이었다.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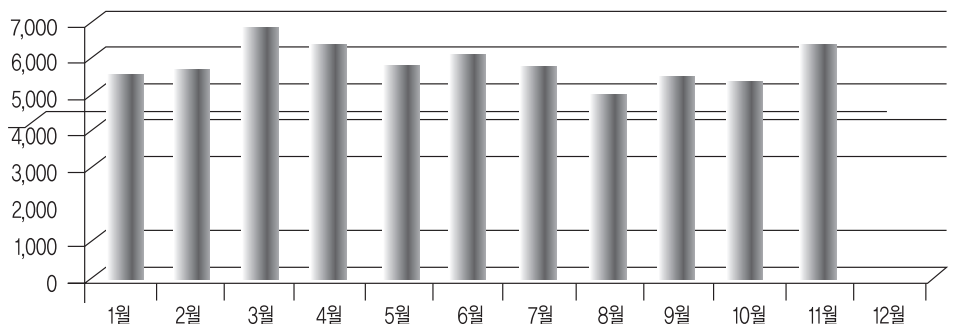
담처리별로 살펴보면, 법률상담 5,223건(86.9%), 화해조정 629건(10.5%), 소장 등 서류작성 50건(0.8%), 소송구조 105건(1.7%)이었다.

법률상담 5,223건을 사건내용별로 살펴보면, 2021년 10월에 비해 가사사건의 경우에는 남녀관계(0.4%→0.5%), 부부갈등(3.9%→4.1%), 이혼(24.5%→26.4%), 인지(1.0%→1.3%), 친생자존부(2.3%→2.5%), 가족관계등록부(3.1%→3.3%), 성변경(0.9%→1.0%), 미성년후견(0.6%→0.7%), 성년후견

(2.6%→2.7%), 가사절차(5.7%→6.5%), 가사기타(8.8%→10.5%)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한편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임대차(0.1%→0.2%), 민사기타(0.3%→0.6%)에 관한 상담이 증가하였다.

법률상담 5,223건을 상담방법별로 살펴보면, 면접상담 913건(17.5%), 전화상담 4,208건(80.6%), 인터넷상담 92건(1.8%), 순회상담 10건(0.2%)이었다.

**2021년
월별
총건수**



- 11.1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 대상
가족법 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 11.12. 구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상담사 및 직원 대상
가족법 및 가정폭력특별법 강의
- 김진영 상담위원
- 11.24 비혼모가정워크숍 : 가족법강의 및 상담
- 조은경 상담위원
- 11.25.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상담원 대상
가족법 교육
- 복미영 상담위원

● 가정법원 출장상담

조경애, 박소현, 조은경, 복미영, 김진영, 최수진,
전규선, 천다라, 유혜경, 권지연 상담위원
김민선, 손명진 변호사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은 11월 18일 여성정책연구원 주최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양육비 변동 및 그 변동 내역의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하였다. 2일, 9일, 16일, 23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갈클리닉Ⅱ수업을 진행하였다. 24일 서울가정법원 이혼 등 조정에 참여하였다.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11월 5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등 조정신청 사건을 조정하였고, 13일에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건을, 27일에는 이혼 사건을 각 조정하였다. 24일에는 서초구성평등활동센터에서 진행되는 4대 폭력예방교육 동영상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과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주제로 가정폭력예방교육 동영상을 촬영하였다(각 20분 분량). 동영상은 서초구 관내 기관종사자들에게 교육영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자원봉사자

• 전화 안내를 도와주신

강경숙, 김정혜, 문은전, 박선화, 유문숙 님

• 영어 상담을 도와 주신

David M. Waters 변호사 님 (사이버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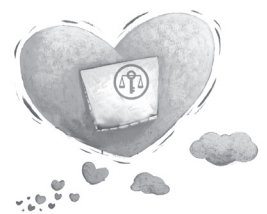
• 학생 자원봉사

김남영, 김민주, 김민지, 김승현, 김준호, 김지민,
김지윤, 김지현, 김찬우, 김현정1, 김현정2, 김혜원,
김효빈, 김효진, 노재욱, 류지원, 문예빈, 민지용,
박도윤, 박성환, 박연우, 박지희, 봉수빈, 손사빈,
신수민, 오수민, 오지현, 윤정희, 윤진호, 윤채은,
이상아, 이상지, 이서현, 이세진, 이수민, 이승준,
이시현, 이주연, 장보민, 장윤아, 장지수, 전우인,
정유나, 정채연, 조예원, 조예진, 천윤빈, 최세빈,
최예진, 한봄이 님

후원 고맙습니다

• 운영후원금을 주신 분

김용현, 이현혜 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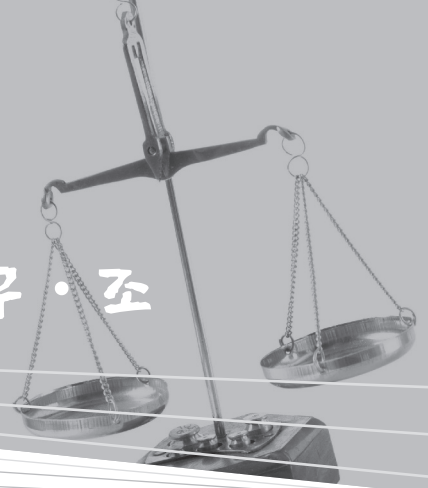


● 회원이 되시려면 ●

일반회원들은 월 5천원씩 또는 년 5만원. 평생회원은 50만원을 일시 납입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 밝히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아래의 구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주소가 변경된 회원은 반드시 상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 317-0003-1418-1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연락처 : 02-780-5688 재무회계과



완결된 소송구조 사건

사업실패로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0-974

담당 : 서지연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0세)은 1990년경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사업자금을 담보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하지만 계속된 적자로 인해 이자를 변제할 능력이 없던 신청인은 채무돌려막기를 하게 되었다. 그러다 경영난이 장기화되면서 사업유지가 어려워졌고, 결국 폐업과 동시에 담보 물건인 부동산도 경매처분 되었다. 이후 친척의 도움으로 월세보증금 500만원을 가까스로 만들어 조그마한 임대주택에서 생활하였다. 채무를 온전히 다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였던 신청인은 마땅한 직장을 구할 수 없어 봉제공장에서 일용근로를 하였다. 그런 와중에 2020년경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하나뿐인 자녀는 알코올중독자가 되었다. 결국 신청인이 자녀를 부양하여야 했으며, 월 평균 70만원의 소득으로는 생활비를 제외한 이자상환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채무지급불능상태가 되었다. 이처럼 신청인은 사업실패로 3,700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으므로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0. 1.)

채무자를 면책한다.

17년 전 외도로 가출한 후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의 이혼 판결

법률구조 2021-1-93

담당 : 안서연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여, 56세)와 피고(남, 60세)는 1988년 8월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2녀(31, 28세)를 두고 있다. 피고는 2003년경부터 자주 외박을 하며 외도를 하였고, 2004년경 갑자기 집을 나가 연락마저 두절하였다. 당시 원고는 전세자금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을 갚아야 하는 막대한 상황이었고, 원고는 피고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면서 17년간 두 딸을 키웠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승소(서울가정법원 2021. 10. 28.)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결정

법률구조 2021-1-180

담당 : 강길복 변호사

사건명 :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내용 : 채권자(여, 49세)와 채무자(남, 39세)는 2007년

10월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08년 5월경부터 동거를 하여 슬하에 사건본인(여, 11세)을 두었다. 채권자가 사건본인을 임신한 후 채권자와 채무자는 채권자의 친정이 있는 강릉으로 가기로 결정하였으나 채권자의 아버지와 채무자 사이에 다툼이 생겨 채권자는 강릉시, 채무자는 서울에서 한동안 떨어져 살게 되었다. 이후 채무자는 점차 연락을 하지 않았고, 사건본인을 낙태하자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채권자는 사건본인을 출산하였고, 이후 인지 및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하여 채무자는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000만원, 장래양육비로 2017년 9월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매월 말일에 4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받은 후에도 채무자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채무자의 최근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골프 등 고가의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에 비해 현재 채권자는 자활근로를 하고 있지만 월 160만 원의 수입만으로 사건본인과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10. 3.)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

**사기를 당해 채무가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법률구조 2021-1-219

담당 : 박수열 변호사

사건명 : 개인파산 및 면책

내용 : 신청인(여, 65세)은 1983년경 혼인 후 가정주부로 생활하였다. 2003년경 자녀가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신청인은 집에 혼자 남는 시간이 많아졌고, 외로움과 우울증이 느껴질 때 짬 조카가 자주 찾아왔다. 조카는 신청인을 데리고 놀러 다니며 신청인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카는 신청인에게 자신이 신용불량자라 휴대폰 개통이 되지 않는다고 휴대폰 요금은 꼬박꼬박 잘 납부할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신청인은 글도 모르는 까막눈이라 조카를 믿고 부탁을 들어주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날아오는 독촉장을 보고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조카는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5,000만원을 사용한 것이었다. 그렇게 명의사기를 당한 이후로 가정에는 잦은 불화가 발생하였고, 결국 배우자가 연락을 끊고 가출을 하는 사태까지 치닫게 되었다.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신청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배우자의 부재로 신청이 불가능하였다. 현재 신청인은 미화원으로 일하며 월 평균 100만원의 소득이 있으나 고령으로 인해 퇴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신청인은 명의도용을 당해 8,300만원에 달하는 채무가 발생했지만 고령과 건강문제로 인해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신청인은 장래경제적 갹생을 도모하기 위해 상담소에 개인파산 및 면책의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면책결정(서울회생법원 2021. 10. 14.)

채무자를 면책한다.

**양육에 책임이 있는 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정**

법률구조 2021-1-325

담당 : 박성미 변호사

사건명 : 양육비 변경

내용 : 청구인(여, 32세)과 상대방(남, 34세)은 2017년 1월경 혼인 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사건본인(여, 4세)을 두었으나 2017년 10월경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당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청구인이 지정되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 당시에는 상대방이 무직이었기 때문에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포기하였다. 청구인은 2017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월 140만 원 가량의 수입으로 홀로 사건본인을 힘들게 양육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수입만으로 사건본인을 양육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며, 현재 상대방은 직장을 다니며 고정된 수입이 있고 금팔찌 등 사치품을 구입한 정황도 발견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보다 안정적인 양육을 위해, 양육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조정(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10. 25.)

1.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7호협000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의 2017. 10. 12.자 양육비부담조서 중 2021. 10. 25. 이후의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1. 11.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일까지 월 40만 원씩을 매월 6일에 지급한다.

2. 상대방은 매월 셋째 주 일요일 10:00부터 14:00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 할 수 있다.

3.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주거지에서 사건본인을 인도받아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고, 사건본인을 위 주거지에 데려다 준다.

4. 청구인은 위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실시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5.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심판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아내와의 이혼 화해권고결정

법률구조 2021-1-390

담당 : 공영서 변호사

사건명 : 이혼

내용 : 원고(남, 58세)와 피고(여, 55세)는 1992년 1월경 혼인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2남(29, 27세)을 두고 있다. 원고는 사업실패 후 피고와 함께 2005년 경 치킨집을 개업하여 운영하였으나 피고는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원고는 종교에 빠져있는 피고를 대신하여 자녀들의 식사와 등교까지 챙겨주느라 힘든 시간을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치킨집 운영마저 그만두고 싶다고 하여 결국 원고 혼자 운영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갈

등으로 힘들어져 2007년 경 가게를 폐업하였다. 원고는 채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집이 경매되고 남은 청산금을 피고에게 주고 함께 살려고 했지만,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다. 원고는 고시원 등을 전전하다 현재 여동생 집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와는 13년째 별거 중으로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률구조를 요청하였다.

결과 : 화해권고결정(수원가정법원 2021. 10. 22.)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조경애 법률구조1부장



2022년 1월 교육부

이혼, 현실과 미래 더 생각해보기

부부갈등 및 이혼에 관해 보다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심사숙고함으로써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 ▶ 대상 : 결혼생활의 어려움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남녀 (당사자 외 참여불가)
- ▶ 내용 : - 1단계 : 법률상담 및 이혼 관련 비디오회상 매주 평일 상시
- 2단계 : 집단심리상담 (이혼 전 교육 1단계 참가자, 사전예약 필수)
연중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 오후 2시~4시 (2021년 12월 휴강, 2022년 1월 10일, 1월 24일 예정)
- ▶ 강사 : 김명순 소장 (세은심리상담연구소)

등지고실 : 무료공개강좌

나와 가족의 정신건강과 행복한 가족관계형성을 돕는 교육강좌

- ▶ 일 시 : 매월 둘째 목요일 오후 3시~5시
- ▶ 대 상 : 참여를 원하는 사람 누구나
- ▶ 진 행 : 이서원 소장(한국분노관리연구소), 황순찬 외래교수(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및 본소 상담위원
- ▶ 일정 및 강의제목

일정	강 의 제 목	강 사
12월 9일	안정된 삶을 방해하는 불안 및 공황장애	황순찬 외래교수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생활법률강좌

- ▶ 일시 : 연중(요청 시 사전일정 조율)
- ▶ 신청방법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전화 또는 메일로 신청)

- 전문가를 위한 출장 법 교육

1366 상담원, 이주여성 지원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전문상담원에게 필요한 가족관련 법률·가정폭력관련 특별법 등을 강의함으로써 직무전문성을 향상시키는 출장 법 교육

- 학교현장을 찾아가는 법 교육 및 폭력예방교육

초·중·고교 학생 및 학부모·교사들에게 가족관련 법률 및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출장 법 교육

- 학생들을 위한 법률구조 체험교육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법률구조·가족관련 법률 및 가정폭력관련 특별법 강의를 통해 법률구조 제도에 대한 이해와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는 체험교육

비혼모 가정을 위한 워크숍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 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 캠프」

비혼모 가정이 처한 법률적·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비혼모 가정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자녀동반 캠프

- ▶ 일시 : 2022년 5월
- ▶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 ▶ 후원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교사들을 위한 법 교육 - 교원직무연수

가족법·가정폭력특별법교육과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전국 초·중·고 교원의 전문능력 함양을 돕는 연수 프로그램

- ▶ 연수과정명 : 법과 생활
- ▶ 과정구분 : 전문성향상과정
- ▶ 연수기간 : 2022년 1월 18일(화) ~ 20일(목) (3일간)
- ▶ 연수운영 방법 구분 : 실시간 쌍방향 원격연수
- ▶ 연수기간 : 15시간(1학점, 성적산출 안함)
- ▶ 연수대상 : 서울·전국 초·중·고 교원 20명(선착순 모집)
- ▶ 연수경비(1인당 자비 부담액) : 무료
- ▶ 교과과정

- 가족법

가족법 변천사 및 법률구조사/혼인에 관한 법률/이혼·친권에 관한 법률 / 친자·양자·친양자에 관한 법률 /부양에 관한 법률 /후견제도에 관한 법률 /상속·유언·유류분에 관한 법률

- 가족관계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 출생신고 / 혼인신고 / 등록부 정정 등

- 가정폭력특별법 및 상담사례연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상담사례연구

- 임대차에 관한 법률

- 아동복지법 관련 학생지도교육
- 폭력예방교육의 이론과 실제

- ▶ 장소 : zoom을 이용한 비대면 강의

- ▶ 교육문의 및 신청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교육부 조은경, 박상진 상담위원

☎ 1644-7077 / E-mail : edu@lawhome.or.kr

홈페이지 : www.lawhome.or.kr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휴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 상 반드시 사전접수 바랍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함께하는

엄마랑 아기랑 행복캠프



일시 ▶
2022년 5월

대상 ▶
참여를 원하는 비혼모 가정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는
비혼모 가정을 위한 강의와 교육,
심리상담 그리고 쉼과 치유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자녀동반 캠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부정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1. 「비혼모 가정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자녀의 출생신고, 자녀의 성과 본, 인지, 양육권과 친권, 면접교섭권, 입양, 양육비 청구, 양육비 이행강제, 파산 및 면책, 개인회생, 가정폭력 등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딪치게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강의와 상담

2. 「행복 보금자리 마련을 위한 강의 및 상담」

▷ 강의내용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은?'이란 주제로 소득계층별 주택지원 사업과 청약통장의 활용방법, 영구임대 · 매입임대 · 전세임대 · 국민임대 등의 임대주택의 유형별 청약신청 방법과 절차, 주거급여, 주거바우처 등 주거복지 자원이용과 향후 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과 관련한 강의 및 상담

3. 동반 자녀들을 위한 「놀이치료」

4. 온가족이 함께하는 「레크리에이션 및 가족소통 체험활동」

▶ 후원 :  삼성생명의 지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 일정 및 교육내용은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바일에서도 편리하게
사이버상담을 이용하세요.



<http://lawhome.or.kr/m>

